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
(박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84 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 박정훈·김선교·임종득

최은석 · 김정재 · 이성권

고동진 • 박충권 • 유용원

이양수 · 배현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도심 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.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, 분진 발생,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.

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유휴공간을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,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부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, 상부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의 신속한 추진 통해 주민복리와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철도부지와 도시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(안 제 3조).
- 다.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함(안 제4조).
- 라. 시·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).

- 마.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,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바.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사.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15조).
- 아.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건축상의 특례, 부담금 등의 감면,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(안 제12조, 제1 6조 및 제17조).

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 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 증 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도시철도"란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.
 - 2. "도시철도부지"란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 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.
 - 3. "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"이란 도시철도지하화사업과 도시철도부 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.
 - 4. "도시철도지하화사업"이란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5. "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"이란 도시철도부지 및 도시철도 주변지역 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 - 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
- 다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-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6. "도시교통권역"이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교통권역(交通圈域)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 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지하화통합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도시철도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.
 - 1. 「도시철도법」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
 - 2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
 - 3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

계획

- 4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대도시 권 광역교통기본계획
- 5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대 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른 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계획 및 도시·군기본계획
- 7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
- 8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
- 9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대 중교통기본계획
- ③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종합계획의 내용)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1.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
 - 2.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
 - 3.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
 - 4.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
 - 5. 그 밖에 효과적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수립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·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
 - 2. 도시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
 - 3.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
 - 4.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 시행 예정 지역의 범위

- 5.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
- 6.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
- 7. 재원 조달 계획
- 8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7조(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 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,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기본계획의 확정·고시 등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 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업시행자) 시·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출

자받은 자 또는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를 도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로 지 정한다.

- 제10조(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)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도시철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.
- 제11조(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)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2조(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) 시·도지사는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복합적·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
 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
 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
 - 4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

또는 녹지 확보 기준

- 5.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, 같은 법 제19조 및 「주택법」 제35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
- 6. 「건축법」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제한 제13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
 - ②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 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다.
- 제14조(국공유재산의 출자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도 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부지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.
 - 1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 - 3.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

-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철도부지를 대부, 매각,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 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.
- ④ 도시철도지하화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「도시철도법」 제 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된다.
- ⑤ 국공유재산의 처분 방법·절차·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)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철 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 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 달된 재원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.
 - ③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방법・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부담금의 감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부지개발사 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「수도권정비계획 법」,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

관한 특별법」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, 개발부담금,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17조(기반시설 지원 등) ① 시·도지사는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 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,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 시·도지사는 도시철도지하화통합 개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 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9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·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도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

정한다.

- 제2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,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·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.
- 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자
 - 2.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 - 3.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